

---

#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실태 조사결과

---



광 양 시  
(감 사 실)

#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실태 조사결과

## I 추진배경

- (시 의 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2022. 12. 1.)
  - 방만한 인건비 책정 여부, 목적 외의 사업비 집행 등
- (참여연대) 성명서 발표(2022. 12. 5.)
  - 시, 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특별감사팀 구성 요구 등
- (언론보도) 여수MBC, NSP통신, 광양신문 등(2022. 12. 5.)
  - 인건비 과다, 비합리적인 지출, 후원물품 비합리적 배분 등

## II 조사개요

- (조사대상)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주민복지과
- (조사범위) 2020. 1. 1. ~ 2022. 12. 31.
- (조사방법)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병행 실시)
- (조사반) 조사팀장 등 3명
- (주요 조사내용)
  -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등) 과다 책정 여부
  - 후원물품(포스코 지원차량) 수혜기관 선정 적정성
  - 재단의 목적 외 사업비 집행
  - 전결규정 준수 등 예산집행 적법성 등

### III 행정사무감사 및 언론보도 주요 지적사항 조사결과

#### ①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과다 책정 관련

##### 가. 기본급

- 재단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별표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직종-사회복지직)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 전국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협의회 용역보고서<sup>1)</sup>를 참고하여 조사 한 바 전국 지자체 출연복지재단 20개 중 인건비 가이드라인을(사회복지직) 적용하고 있는 곳은 14개소 임.
- 재단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지급기준은 2017. 11. 보수수준이 전국 복지재단 중 최하위권임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전국 복지재단 및 관내 수탁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변경【사무직(2015년) → 사회복지직(2018년)】 협의하였고
- 현 시점에서 전국 복지재단 및 관내 수탁시설과 비교 한 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별표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을 준용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나. 제수당

- 급식비 수당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에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 되어 기본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에도 2009년 이후에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지속 지급함(월 10만 원) (보수규정을 개정토록 개선요구)

1) 전국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2021. 12. 30. 발행)

-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에 통상임금 산정시 「통상임금 산정 지침」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해당되지 않는 수당(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급식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높게 산정함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5,130천 원을 더 지급함.(회수)

#### 다. 재단 직원 중 입사 초년생 2023년 연봉 4천만 원 지급 관련

- 재단 직원중 입사 초년생(사회복지사 3호봉)의 2022년 기본급은 2,065,600원이고,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연봉은 30,672,900원 임.
- 입사 초년생 연봉 4천만 원에 대한 것은 재단에서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 제출 시 설명 참고자료에 인건비 소요 예상액을 인건비와 관련되지만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보험(3,000천원) 및 퇴직적립금(3,000천원)을 수당으로 잘못 표기한 금액과 2023년에 새로이 기타후생비(1,000천원)을 추가한 금액 및 급여 및 제수당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정확한 자료로 보고가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2 포스코 지정 차량 지원 사업 수혜기관 선정 평가 부적정

- 2022년도 차량지원사업 배분위원회 위원별 점수 집계시 2021년도 차량지원사업 배분위원회 집계표 파일(엑셀)을 이용하여 위원별 평가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 기존 집계표 파일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원별로 점수를 입력하면 자동합산(함수)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전년대비 위원수 증가(2021년 4명→2022년 6명)에 따라 접수 입력란을 “열 삽입하기” 를 활용하여 “열” 추가 생성 후 입력
- 그 결과, “열 삽입하기” 로 추가 입력한 위원 2명의 접수가 집계표(자동합산)에 미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고의성은 없으나 사회적 물의 일으켰으므로 징계요구)

### ③ 재단의 목적외 사업비 집행

#### □ 2021년 진상면 산사태 관련 장례비 및 생계비 지원 관련

- 집행금액 51,000천 원 중 지정기탁금은 40,000천 원이며 비지정기탁금은 11,000천 원(재단에서 별도책정)임.
- 장례비가 21,000천 원 발생되고, 10,000천 원이 먼저 지정기탁이 되어 광양시 협의 요청 등에 따라 재단에서는 11,000천 원을 더해서 장례비 집행(7.13.)함.
- 이후에 3천만 원 유족생계비로 별도 지정기탁됨.(7.27.)
- 정관규정 상 사업의 종류(제4조)가 소외계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제2호)과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업(제6호)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목적외 사업비 집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목적외 집행이라는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23.1.17. 기준 마련함.)

#### 4] 예산집행 결재자의 결재권 모호성

- 재단은 자체 전결규정을 수립하여 재단 내 하위 직급자에게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각 직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나
- 전결규정이 부재하여 결재문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기능이 악화될 우려 발생
- 전결처리 규정을 마련토록 개선요청

## IV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 목 록

- ① 수당지급 부적정(개선.시정)
- ② 「보수규정」개정 시 사전협의 미 준수(시정)
- ③ 포스코 지정 차량 지원 사업 수혜기관 선정 평가 소홀(징계.주의)
- ④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⑤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주의.시정)
- ⑥ 후원금 정산업무 소홀(주의.시정)
- ⑦ 자체 위임전결기준 부재에 따른 내부통제 소홀(개선)

# 광 양 시

## 개선 · 시정 요구

□ 제 목 : 수당 지급 부적정

□ 기 관 명 : (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관계부서 : 주민복지과

□ 내 용

-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보수규정」을 2008. 1. 29. 제정해 2022. 9. 21. 등 9차례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급식비 수당 지급 부적정

- 재단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보수규정」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봉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에는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되어 있다.
-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인건비 (2)수당 등에 따르면 총인건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위 지침과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단 소속 호봉제 직원의 기본호봉에는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은 호봉제 직원에게 기본호봉에 포함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러나 재단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보수규정」 제22조(수당 지급)규정에 있는 급식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2009년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매월 10만 원씩의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 2.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

- 재단은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보수규정」 제22조(수당 지급) ③항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월 1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산출 근거는 통상임금 $\times$ 1/209 $\times$ 1.5 $\times$ 시간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 그리고 같은 지침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는 별표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예시로 가족수당과 급식비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되어있으며, 고정임금이 아닌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이 될 수 없다.
- 그러나 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조사범위) 아래 【표2】와 같이 통상임금 산정 시 가족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높게 산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5,130,140원을 더 지급하였다.



【표2 2020년~2022년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원)

성명	지급기간	직책	초과수당 지급액(A)	규정상 지급액(B)	차액 (A-B)
000	2020.1.~2022.4.	사무처장	5,453,630	4,932,370	521,260
000	2022.5.~2022.12.	사무처장	1,716,300	1,521,760	194,540
000	2020.1.~2022.12.	팀장	10,514,870	9,405,890	1,108,980
000	2020.1.~2022.12.	팀장	6,870,500	6,219,570	650,930
00	2020.10.~2021.3.	단장	1,560,460	1,266,660	293,800
000	2020.4.~2022.12.	대리	6,147,550	5,331,810	815,740
000	2020.1.~2021.11.	팀원	3,403,450	3,136,060	267,390
000	2020.1.~2021.10.	팀원	3,026,890	2,783,940	242,950
000	2021.1.~2021.3.	팀원	456,780	435,240	21,540
000	2021.7.~2022.3.	팀원	1,374,300	1,224,960	149,340
000	2020.1.~2020.9. 2022.4.~2022.12.	팀원	3,001,220	2,816,730	184,490
000	2022.5.~2022.12.	팀원	1,491,400	1,271,040	220,360
000	2022.4.~2022.12.	팀원	1,501,930	1,043,110	458,820
계					5,130,140

조치할 사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 ①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보수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기본급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규정 제22조 ③항의 급식비 지급을 삭제하시기 바라며(개선)
- ② 「통상임금 산정지침」 등에 따라 과다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5,130,14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광 양 시

## 시 정 요 구

□ 제 목 : 「보수규정」개정 시 사전협의 미 준수

□ 기 관 명 : (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관계부서 : 주민복지과

□ 내 용

-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보수규정」을 2008. 1. 29. 제정해 2008. 11. 06. 등 9차례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주민복지과는 광양시 출연기관인 재단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고 있어 중요 협의사항 요청 시 면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는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재단 정관」 제33조(시행규정)②항에는 직제 및 정원 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규정관리 규정 등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양시장과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재단 보수규정」 제22조(수당지급)을 아래 【표】와 같이 2020.9.23일자 일부 개정하였다.

【표】 「재단 보수규정」 제22조(수당지급) 개정내용

(단위:원)

구분	기존	변경	증액
시간외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시간 -월10시간내(실적분)	통상임금 ×1/209×1.5×시간 -월10시간내(실적분)	명칭 변경
직책업무추진비(이사장)	500,000	1,000,000	월 500,000
직책수당(사무처장)	300,000	500,000	월 200,000

※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재단에서는 보수관리 규정을 2020.9.23.일자로 일부 개정하면서 2020.9.22.에 광양시장(주민복지과)에게 “이사회 상정 안건 제출 및 보고” 공문만 보내고 광양시장(주민복지과)의 회신(협의사항)도 받지 않고 다음 날인 2020.9.23.일 서면 이사회 의결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
- 주민복지과에서는 협조요청에 대한 문서만 접수하고 검토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에 따른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과 주민복지과장은

- ① 2020.9.29.자 「재단 보수규정」 제22조(수당지급) 개정내용 등을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 광 양 시

## 징계 · 주의 요구

□ 제 목 : 포스코 지정 차량 지원 사업 수혜기관 선정 평가 소홀

□ 기 관 명 : (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관계부서 : 주민복지과

□ 내 용

-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202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지정 후원사업(1억원)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49개소 중 정량평가(70%) 고득점 시설 12곳을 대상으로 정성평가(30%)를 통해 최종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배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다.
-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 의무)① 모든 직원은 복지재단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관계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재단에서는 2022.10.27. 2022년도 차량지원사업 배분위원회 위원별 점수 집계 시 2021년도 차량지원사업 배분위원회 집계표 파일(엑셀)<sup>2)</sup>을 이용하여 위원별 평가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전년 대비 위원 수가 증가(2021년 4명→2022년 6명)하였으나 2명의 점수를 집계표에 미반영하였다.

2) 2021년도 집계표 파일은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원별로 점수를 입력하면 자동합산(합수)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그 결과 아래 【표】 와 같이 당초 2위로 선정되었던 C기관이 4위로 제외되고, 당초 4위로 미선정 되었던 B기관이 2위로 재선정 되어 수혜기관 순위변동이 발생하게 되었고 시의회 지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표】 차량지원사업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혜 기관 선정 평정 변경사항

구분	대상기관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F위원	집계	결과	비고
당초	A기관	88	90	90	<u>89</u>	<u>90</u>	90	<u>358</u>	1	D,E 위원 미합산
	B기관	75	75	70	<u>81</u>	<u>90</u>	81	<u>301</u>	4	
	C기관	78	78	80	<u>78</u>	<u>70</u>	79	<u>315</u>	2	
	D기관	76	77	80	<u>79</u>	<u>80</u>	79	<u>312</u>	3	
변경	A기관	88	90	90	<u>89</u>	<u>90</u>	90	<u>537</u>	1	
	B기관	75	75	70	<u>81</u>	<u>90</u>	81	<u>472</u>	2	
	C기관	78	78	80	<u>78</u>	<u>70</u>	79	<u>463</u>	4	
	D기관	76	77	80	<u>79</u>	<u>80</u>	79	<u>471</u>	3	

조치할 사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 ① 포스코 지정 차량 지원 사업 수혜기관 선정 평가시 집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미반영하여 수혜기관의 순위변동을 발생하게 하고, 시의회 지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00팀장 000을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복무규정」 제42조 등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라고(징계)
- ② 앞으로 지원사업 수혜기관 선정업무과 관련하여 최종 집계표 작성 및 확인 소홀 등으로 수혜기관이 부당하게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광 양 시

## 주 의 요 구

- 제 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기 관 명 : (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관계부서 : 주민복지과
- 내 용

### 1.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집행 부적정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비영리 법인의 비수익사업(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 추진(업무협약,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21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2년부터)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조사범위) 아래 **【표1】** “기관운영비 집행 명세”와 같이 2020년 18건, 3,108,110원, 2021년 31건, 3,473,400원, 2022년 22건, 3,811,900원 총71건, 10,393,410원을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채 예산 집행하여 명확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라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하나 비상근 임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 과 같이 2020년 1건, 630,000원, 2021년 2건, 1,642,200원, 2022년 3건, 1,838,000원 총 6건, 4,110,200원을 비상근 임원의 명절선물 구입으로 기관운영비를 집행하였다.

**【표1】**

기관운영비 집행 명세(2020년)

지출일자	계정명	적요	지출금액(원)
계		19건	3,738,110
2020-04-22	기관운영비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 간담회	164,000
2020-05-08	기관운영비	재단 임직원 및 수탁시설 간담회	180,000
2020-05-20	기관운영비	재단 화환 구입	110,000
2020-05-25	기관운영비	재단 임직원 업무협의 식비	91,000
2020-06-16	기관운영비	재단 및 수탁시설 관계자 업무협의 식비	135,000
2020-07-16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비	50,000
2020-08-03	기관운영비	복지재단 업무협의 식비	155,000
2020-09-24	기관운영비	임원 명절 선물구입	630,000
2020-10-06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233,000
2020-10-12	기관운영비	법인 및 유관기관 식비	259,610
2020-10-12	기관운영비	전남복지재단 워크숍 참석 간식비	38,500
2020-10-29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격려물품 구입	30,000
2020-10-30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70,000

2020-11-03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화환 및 꽃다발(14건)	1,250,000
2020-11-16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112,000
2020-12-04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80,000
2020-12-11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60,000
2020-12-15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40,000
2020-12-16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비	50,000

### 기관운영비 집행 명세(2021년)

지출일자	계정명	적요	지출금액(원)
계		33건	5,115,600
2021-01-22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50,000
2021-02-09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축하화환(5건)	600,000
2021-02-09	기관운영비	임원 명절 선물 구입(17개)	846,600
2021-02-15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중식비	80,000
2021-03-02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중식비	64,000
2021-03-04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중식비	56,000
2021-03-09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중식비	40,000
2021-03-25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중식비	29,000
2021-03-31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사비(2건)	189,000
2021-04-09	기관운영비	임직원 업무협의 중식비	94,000
2021-04-30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행사 축하금	100,000
2021-05-10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비	20,000
2021-05-26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96,000
2021-05-31	기관운영비	임원 업무협의 식비	20,000
2021-06-15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중식비	155,000
2021-06-23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2건)	88,000
2021-07-06	기관운영비	수탁시설-@@@노인요양원 내방 물품 구입	50,000
2021-07-12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중식비	54,000
2021-07-22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중식 및 간식비	106,500
2021-08-05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및 업무협의 식비(2건)	102,000
2021-08-31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53,000
2021-09-06	기관운영비	임직원 업무협의 간식비	10,900
2021-09-14	기관운영비	임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795,600
2021-10-12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48,000
2021-10-28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2건)	271,000



2021-11-02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비(3건)	282,000
2021-11-08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중식비	98,000
2021-11-17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비	142,000
2021-12-01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200,000
2021-12-03	기관운영비	수탁시설 업무협의 식비	78,000
2021-12-29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105,000
2021-12-30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100,000
2021-12-31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비	92,000

### 기관운영비 집행 명세(2022년)

지출일자	계정명	적요	지출금액(원)
계		25건	5,649,900
2022-01-04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40,000
2022-01-19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비	48,000
2022-01-26	기관운영비	임원 설명절 선물 구입	936,000
2022-02-04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258,000
2022-02-07	기관운영비	직원 업무협의 식비	40,000
2022-02-08	기관운영비	임원 설명절 선물 추가 구입	52,000
2022-02-28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2건)	86,000
2022-03-03	기관운영비	수탁시설 간담회 식비	115,000
2022-03-21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96,000
2022-03-29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69,000
2022-04-04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238,000
2022-04-27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식비	175,000
2022-04-29	기관운영비	법인 및 수탁시설 간담회 식비	188,000
2022-06-07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비	48,000
2022-06-24	기관운영비	직원 간담회 식비	74,000
2022-06-24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방문 물품 구입	10,800
2022-07-29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방문 물품 구입	10,800
2022-08-30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67,300
2022-08-30	기관운영비	임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850,000
2022-09-06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125,000
2022-09-19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120,000
2022-11-15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64,000
2022-11-23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식비	230,000
2022-12-29	기관운영비	임직원 간담회 식비	119,000
2022-12-29	기관운영비	유관기관 화환 및 꽃다발(14건)	1,590,000

## 2. 비지정후원금 관리 부적정

- 재단 「기부금품관리규정」 제7조(기부금품의 수납 및 관리)에 따르면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의 사용금지)에 따라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조사범위) 아래 **【표2】** “비지정후원금 수탁시설 전출금 집행 명세”와 같이 2020년 2건, 20,000천 원, 2021년 2건, 30,000천 원, 2022년 1건, 20,000천 원 등 총 5건, 70,000천 원을 법인전출금(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출금으로 교부·집행하여 비지정후원금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 확보가 결여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이로 인해 수탁시설에서는 비지정후원금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인식하게 하여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와 적립금, 준비금 등의 항목에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주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을 위반할 소지를 남겼다.

**【표2】**

비지정후원금 수탁시설 전출금 집행 명세

지출일자	계정명	적요	지출금액(원)
계		5건	70,000,000
2020-09-10	수탁시설전출금	광양&&&& 법인전출금 지원	10,000,000
2020-12-04	수탁시설전출금	광양&&&& 법인전출금 지원	10,000,000
2021-08-27	수탁시설전출금	@@@노인요양원 법인전출금 지원	20,000,000
2021-11-02	수탁시설전출금	광양&&&클럽 법인전출금 지원	10,000,000
2022-01-25	수탁시설전출금	@@@노인요양원 법인전출금 지원	20,000,000

3. 근거없는 세출과목 편성·집행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예산편성 기본방향, 편성원칙,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편성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업무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단은 과태료·과징금·가산금 등은 법인 회계에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아래 【표3】과 같이 2020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건 55,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비상근 이사회 임원들의 선물 구입을 부적합한 편성목(회의비)에서 2020년 1건 378천 원, 2021년 1건 433천 원, 총 2건 811천 원을 집행하였다.
- 또한, 재단 규정 내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사장 및 직원의 관내 소재한 수탁시설 방문 여비로 실비 지급이 아닌 법인카드 사용 2020년 1건 121,500원을 집행하면서 출장 세부내역 등의 여비 산출 근거 없이 지출하였다

- 이뿐 아니라 비지정후원금으로 추진하는 과년도특화사업을 운영하면서 2022년에 수탁시설 에어컨 수리비 1,100천 원을 지원하는 등 일관된 기준없이 사업비를 집행해 업무처리에 신뢰도가 결여될 우려를 범하였다.

**【표3】**

근거없이 편성·집행한 예산 명세(2020년)

지출일자	계정명	적요	지출금액(원)
계		3건	554,700
2020-02-20	제세공과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납부	55,200
2020-05-25	여비	재단 이사장 및 직원 수탁시설 방문	121,500
2020-12-18	회의비	이사회 임원 선물 구입	378,000

근거없이 편성·집행한 예산 명세(2021년)

지출일자	계정명	적요	지출금액(원)
계		1건	433,000
2021-12-14	회의비	이사회 임원 선물 구입	433,000

근거없이 편성·집행한 예산 명세(2022년)

지출일자	계정명	적요	지출금액(원)
계		1건	1,100,000
2022-07-08	과년도특화사업	수탁시설 에어컨 수리비 지원사업	1,100,000

**조치할 사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광 양 시

## 주 의 · 시 정 요 구

□ 제 목 :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 기 관 명 : (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관계부서 : 주민복지과

□ 내 용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회계담당자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 따라서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관리하여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2022년 12월 14일 기준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재단은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아래 【표】 “포인트 집계 현황”과 같이 총적립포인트 5,222,504점 중 256,627점을 소멸시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법인카드로 발생 된 포인트 1,149,134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 ('23.1.26.)까지 세입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법인카드 포인트 집계 현황(2022년 12월 14일 기준)

포인트명	총적립포인트	총사용포인트 (세입처리)	총소멸포인트	총잔여포인트
Che um 비즈포인트	5,222,504	3,816,743	256,627	1,149,134

조치할 사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적립된 법인카드 포인트 1,149,134점을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광 양 시

## 주의 · 시정 요구

□ 제 목 : 후원금 정산업무 소홀

□ 기 관 명 : (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관계부서 : 주민복지과

□ 내 용

-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기부금품 관리 규정」 제7조(기부금품의 수납 및 관리)제2항에 이사장과 시설의 장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 또한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각 단체에 후원금 사업비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으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를 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후원자의 뜻에 따라 후원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었는지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조사범위) 아래 **【표】** “사업비 집행 미정산내역”과 같이 2020년 26건, 37,986,000원, 2021년 17건, 30,058,480원, 2022년 2건, 4,300,000원 총45건, 72,344,480원을 정산서류 제출을 촉구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23.2.3.)까지 사업 정산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 그 결과 후원금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사업비 집행 미정산내역(2020년)

연번	지출일자	사업명	지출금액(원)
계		26건	37,986,000
1	2020-01-08	&&& 지정후원 교부	7,320,000
2	2020-01-08	***** 지정기탁 교부	195,000
3	2020-02-10	광양\$\$\$\$\$\$\$센터 교부신청 지원	400,000
4	2020-02-10	%%%%%%%%%협의회 교부신청 지원	1,000,000
5	2020-02-10	광양지역&&센터 교부신청	3,000,000
6	2020-02-17	중마지역\$\$센터 교부신청	1,000,000
7	2020-03-05	전남*****협회광양시지부 교부신청 지원	3,000,000
8	2020-03-06	한국#### 전남동부지회 교부신청 지원	2,500,000
9	2020-03-16	***** 지정기탁 교부	195,000
10	2020-03-16	%%특수어린이집 지정기탁 교부	65,000
11	2020-03-20	&&&&봉사단 교부신청 지원	3,820,000
12	2020-04-06	***** 지정기탁 교부	195,000
13	2020-04-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부신청 지원	8,000,000
14	2020-04-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부신청 지원	1,000,000
15	2020-05-27	***** 지정기탁 교부	195,000
16	2020-05-29	광양%%%%센터 교부신청 지원	500,000
17	2020-06-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부신청 지원	500,000
18	2020-06-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부신청 지원	500,000
19	2020-06-3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부신청 지원	200,000
20	2020-06-30	***** 지정기탁 교부	195,000
21	2020-09-07	중마\$\$\$\$\$\$\$ 지원	1,000,000
22	2020-10-0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부금 지원	2,000,000
23	2020-10-22	***** 지정후원금 지원	195,000
21	2020-11-0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 교부	516,000
25	2020-12-11	***** 지정후원금 교부(백운산지역)	195,000
26	2020-12-31	%%특수어린이집 지원	300,000

사업비 집행 미정산내역(2021년)

지출일자	계정명	적요	지출금액(원)
계		17건	30,058,480
1	2021-01-14	몰래산타 지정후원금 교부	3,400,000
2	2021-01-15	광양지역&&센터 지정후원금 교부	6,000,000
3	2021-02-02	&&&지역아동센터 지원	724,140



4	2021-02-04	***** 지정후원금 교부(예담)	195,000
5	2021-02-15	##그룹홈 지정후원금 교부	500,000
6	2021-03-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후원금 교부	3,000,000
7	2021-03-25	&&&&봉사단 지정후원금 교부	3,820,000
8	2021-04-08	##지역아동센터 지정후원금 교부	1,000,000
9	2021-04-14	옥곡면 %%%%%%%%% 지정후원금 교부	499,340
10	2021-04-14	@@@@@ 그룹홈 지정후원금 교부	500,000
11	2021-04-29	광양*****봉사대 지정후원금 교부	1,000,000
12	2021-06-01	***** 지정후원금 교부(우리지역)	185,000
13	2021-07-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후원금 교부	5,000,000
14	2021-07-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후원금 교부	250,000
15	2021-08-18	광양*****봉사대 지정후원금 교부	2,000,000
16	2021-11-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후원금 지원	985,000
17	2021-11-26	\$\$\$\$\$\$\$\$회 지정후원금 교부	1,000,000

사업비 집행 미정산내역(2022년)

지출일자	계정명	적요	지출금액(원)
계		2건	4,300,000
1	2022-02-16	광양&&&모임 지정후원금 교부	1,000,000
2	2022-05-04	광양시####연합회 지정후원금 교부	3,300,000

조치할 사항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미정산 된 후원금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시정)

# 광 양 시

## 개 선 요 구

□ 제 목 : 자체 위임전결기준 부재에 따른 내부통제 소홀

□ 기 관 명 : (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 관계부서 : 주민복지과

□ 내 용

-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문서작성, 처리, 보관 및 보존, 서식, 인장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서 취급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문서규정」을 2008. 1. 29. 제정해 2013. 6. 28.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문서규정」 제25조(전결,대결)①항에 이사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그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결재는 담당→팀장→사무처장→이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따라서 재단은 자체 전결규정을 수립하여 재단 내 하위 직급자에게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전결사항을 최신화하여 각 직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단은 자체 전결규정 등에 따른 명확한 전결 근거 없이 아래  
【표】 “재단 예산집행 결재 현황”과 같이 결재권자(이사장)가 아닌 하위 직급자(사무처장)가 예산집행 등 모든 사항을 전결을 통해 집행하였다.

- 그 결과 결재문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할 뿐만 아니라 재단 내부 통제 기능이 악화될 우려를 발생시켰다.

**【표】 재단 예산집행 결재 현황**

(단위:천)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결의서 (사무처장 전결)	1,497	501	490	506
지출결의서 (사무처장 전결)	3,131	1,007	1,024	1,100

※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 재단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사무 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개선)